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내과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감독 하에 분과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5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분과위원회
2.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2.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

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3. 학술대회 평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급된 평점카드 또는 참석확인서를 인정한다.

제 7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아래 교육회기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수교육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연수교육은 실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1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승인을 불가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2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수교육 실시 후 반드시 2주일 이내에 결과보고(결과보고서, 평점 이수자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때 제 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회기별 총괄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8 조 (등록회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평점카드 교부)

분과위원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점카드(참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 10 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연수강좌의 1일 교육상한 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

1. 연수교육

교육 종류	평점
1. 연수강좌	1평점/1시간
2. 실습	1평점/1시간
3. 학술대회	
인정학회	2평점/1일
관련학회	1평점/1일

1)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학회는 평점카드 또는 참석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인정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초록) 발표 시 제1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평점을 가산한다.

2.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별표 2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 공저인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가산점수 2평점을 더 준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계산한다.

제 11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시행 이전에 실시된 연수교육은 본 규칙에 의해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 개정되었다.
4. 본 규칙은 2003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
5. 본 규칙은 2006년 11월 22일 개정되었다.
6. 본 규칙은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었다.